

#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

## 정비계획 변경(안)

2009. 12. 9



마포구 주택과

# 목 차

- 1 상정사유**
- 2 추진경위**
- 3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**
- 4 관련부서(기관) 협의결과**
- 5 공람심사 결과**
- 6 현황전경사진**
- 7 향후 추진절차**



## 1. 상정사유



- 「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에 의해 진행된  
상암2-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,
- 그동안 시행했던 상암2-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(단독주택지 4층이하,  
근생 50%이하 등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 
절차를 거쳐 사업완료 하고자 함



## 2. 추진경위



- 1990. 10. 13 : 상암2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 (건설부고시 제1990-697호)
- 1992. 01. 29 : 상암2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(서울시고시 제1992-26호)
- 2004. 10. 01 :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 (1, 2지구 분할)
- 2007. 01. 04 :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 (상암동길 확장공사)
- 2009. 11. 05 :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(안) 주민공람 공고
- 2009. 11. 20 :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(안) 주민설명회



### 3.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

#### 위치 및 면적

- 지구의 명칭

: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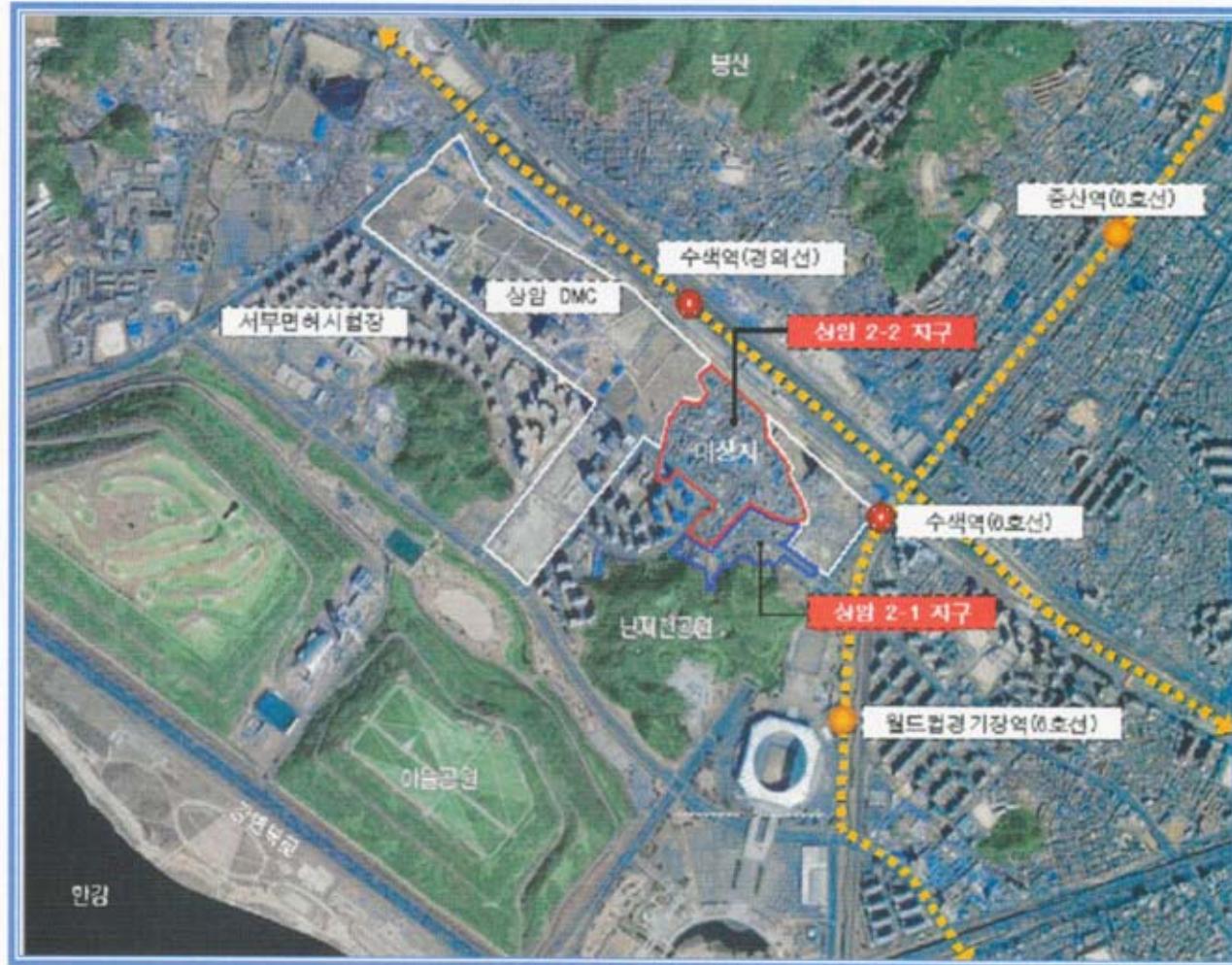
- 위치

: 상암동 20번지 일대

-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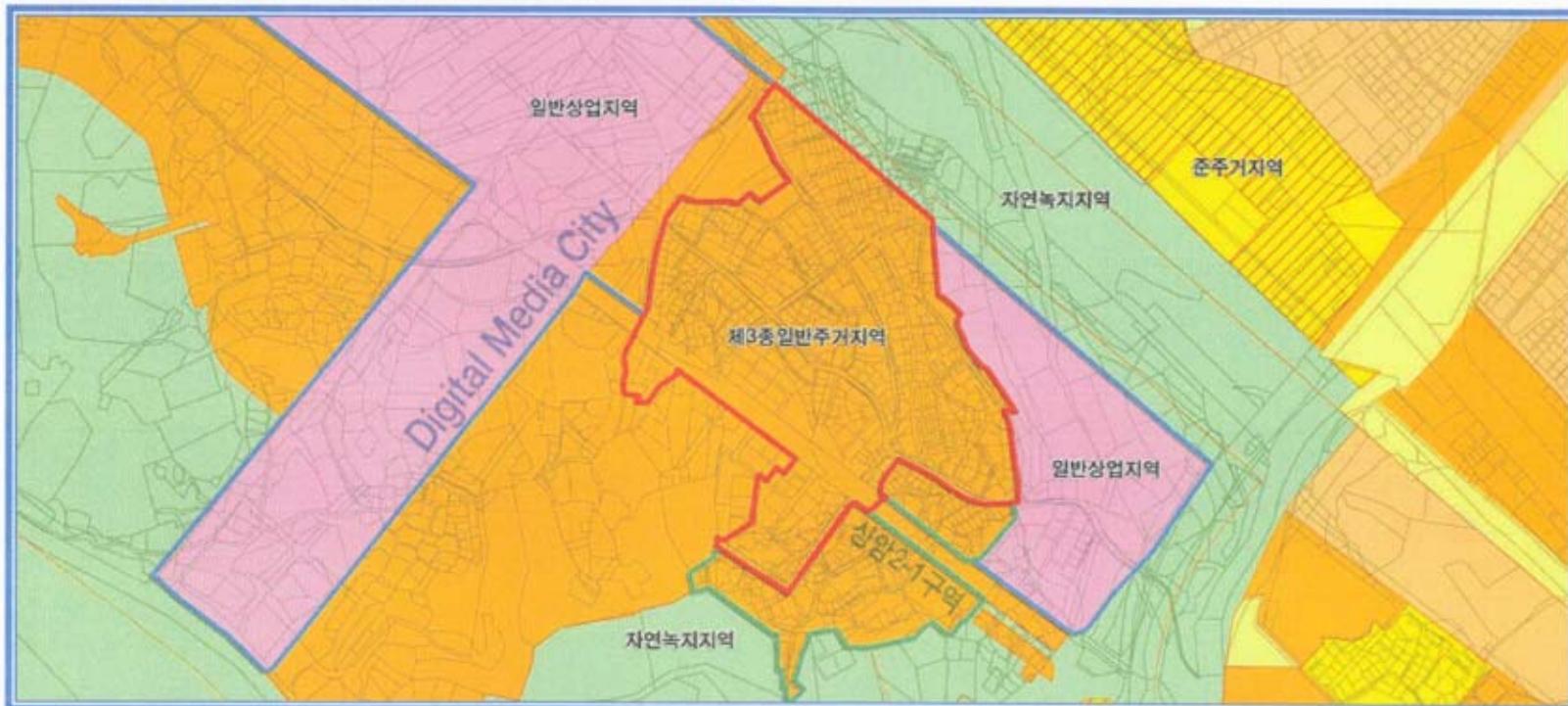
: 135,006m<sup>2</sup>

#### 위치도



### 3.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

#### 용도지역계획 (변경없음)



구 분	소 계	면 적 (m <sup>2</sup> )			비 고
		기 정	증 (감)	변경후	
주거 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35,006	-	135,006	

### 3.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

####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적(m <sup>2</sup> )	비율(%)	비 고
택지 (획지)	합 계	135,006	100.0	
	소 계	90,847	67.3	
	단독주택	88,091	65.3	
	다세대주택	989	0.7	
	근린공공 시설용지	1,524	1.1	
	사회복지시설 (경로당)	243	0.2	
정비 기반 시설	소 계	44,159	32.7	
	도로	43,238	32.0	
	공원	921	0.7	

#### ● 공원

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
			기정	증(감)	변경후
공원	어린이 공원	상암동 14-5	825	증) 96	9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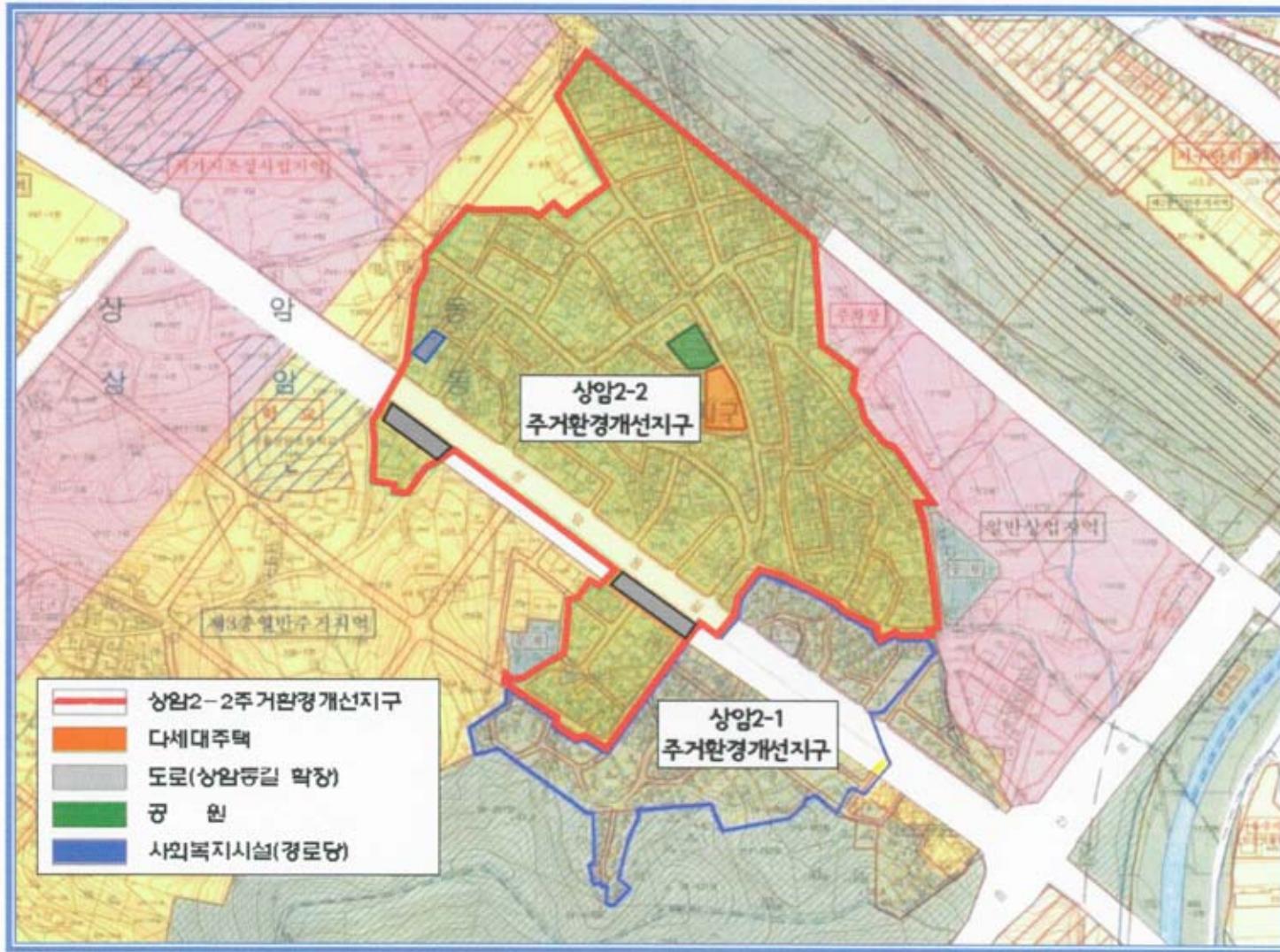
#### ● 사회복지시설 (경로당)

시설 구분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
			기정	증(감)	변경후
노유자 시설	경로당	상암동 115-17, 41-21	243	-	243



### 3.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

#### 정비계획결정도



### 3. 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

#### 건축계획 (주요변경내용)

구분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정	상암동 20번지 일대	용 도	단독주택(근생50%), 다세대주택, 근린공공시설, 사회복지시설	
		건폐율	60~8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총 수	-	
변경	상암동 20번지 일대	용 도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제한 적용	주택, 균생, 종교시설, 노유자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
		건폐율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적용	50% 이하
		용적률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적용	250% 이하
		총 수	제한없음	



#### 4. 관련기관(부서) 협의 결과

협의부서	협의내용	협의회신 내용
서울시 주거정비과	상암2-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 이후 관리방안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거환경개선구역 중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사업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,</li><li>○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그간 투입된 공공의 재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</li></ul>
서울시 도심재정비1담당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해당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개량되어 안정된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으로,</li><li>○ 해당 지역의 기능 및 용도 전환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정비유형의 변경은 부적합함</li></ul>



## 5. 공람심사 결과

구 분	공람의견	공람심사결과(2009.12.08)
장석돌 외 68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시점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경우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립이 대량으로 이루어져, 향후 대상지의 새로운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서울시의 신규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공동주택 건축행위나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채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암2-2지구는 기반시설 확보 및 건축물 개량되어 안정된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이므로, 현 시점에서 정비유형의 변경은 부적합함 (서울시 도심재정비1담당관 협의의견)</li> <li>- 정비계획 변경시 주택등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제한은 불가함</li> </ul> </li> </ul>
채상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암2-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취지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주민은 적극동의 의사표시로 이해하시기 바라며, 장석돌 외 20여명이 제출한 변경 유보의견은 상암2-2지구 전체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은 토지등 소유자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며,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</li> </ul> </li> </ul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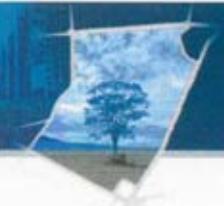
## 6. 현황전경사진



### 전경사진



## 7. 향후 추진절차



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

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

사업 완료 고시

